

(19) 대한민국특허청(KR)
(12) 등록특허공보(B1)

(51) . Int. Cl. ⁷ A24F 15/00	(45) 공고일자 2005년09월22일
	(11) 등록번호 10-0516430
	(24) 등록일자 2005년09월14일

(21) 출원번호 (22) 출원일자 번역문 제출일자 (86) 국제출원번호 국제출원일자	10-2000-7001294 2000년02월07일 2000년02월07일 PCT/US1998/016138 1998년08월03일	(65) 공개번호 (43) 공개일자 (87) 국제공개번호 국제공개일자	10-2001-0022698 2001년03월26일 WO 1999/05934 1999년02월11일
---	---	---	--

(81) 지정국

국내특허 : 알바니아, 아르메니아, 오스트리아, 오스트레일리아, 아제르바이잔,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바르바도스, 불가리아, 브라질, 벨라루스, 캐나다, 스위스, 리히텐슈타인, 중국, 쿠바, 체코, 독일, 덴마크, 에스토니아, 스페인, 핀란드, 영국, 그루지야, 헝가리, 이스라엘, 아이슬랜드, 일본, 캐나다, 키르키즈스탄, 북한, 대한민국, 카자흐스탄, 세인트루시아, 스리랑카, 리베이라, 레소토,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라트비아, 몰도바, 마다가스카르, 마케도니아공화국, 몽고, 말라위, 멕시코, 노르웨이, 뉴질랜드, 슬로베니아, 슬로바키아, 타지키스탄, 투르크멘, 터키, 트리니다드토바고, 우크라이나, 우간다, 미국, 우즈베키스탄, 베트남, 폴란드, 포르투칼, 루마니아, 러시아, 수단, 스웨덴, 싱가포르,

AP ARIPO특허 : 캐나다, 레소토, 말라위, 수단, 스와질랜드, 우간다,

EA 유라시아특허 :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벨라루스, 키르키즈스탄, 카자흐스탄, 몰도바, 러시아, 타지키스탄, 투르크멘,

EP 유럽특허 : 오스트리아, 벨기에, 스위스, 리히텐슈타인, 독일, 덴마크, 스페인, 프랑스, 영국, 그리스, 아일랜드, 이탈리아, 룩셈부르크, 모나코, 네덜란드, 포르투칼, 스웨덴, 핀란드,

OA OAPI특허 : 부르키나파소, 베냉, 중앙아프리카, 콩고, 코트디브와르, 카메룬, 가봉, 기니, 말리, 모리타니, 니제르, 세네갈, 차드, 토고,

(30) 우선권주장	08/910,496	1997년08월04일	미국(US)
------------	------------	-------------	--------

(73) 특허권자	디벤스 씨 스코트 미국 뉴저지 07446 램시 로날드 코트 99
-----------	--

아르노트 로버트 디
미국 플로리다 33065 코랄 스프링즈 노스웨스트 43 앤드 코트 10661

(72) 발명자	디벤스 씨 스코트 미국 뉴저지 07446 램시 로날드 코트 99
----------	--

아르노트 로버트 디
미국 플로리다 33065 코랄 스프링즈 노스웨스트 43 앤드 코트 10661

(74) 대리인	이재민
----------	-----

심사관 : 서준한

(54) 담배라이터 수납 홀더

요약

담배의 소매용인 패키지(5)는 담배를 수납하는 담배갑을 형성하고 있다. 상기 담배갑은 담배갑(10)의 외측벽에 형성된 담배라이터 수납홀더(15)를 포함한다. 상기 담배라이터 수납홀더(15)는 적어도 하나의 바깥면(45)을 포함하며 이 바깥면(45)은 한쌍의 간극된 사이드월(150)에 의해서 담배갑에 연결되어 있다. 이들 사이드월은 라이터 수납홀더(15)가 사용되지 않을 시에는 담배갑면에 실체적으로 바깥면(45)을 접착시킬수 있도록 내측방향으로 접어꺾임이 가능하도록 되어있으며, 라이터 수납홀더(15)를 형성하도록 바깥쪽으로 나올 수도 있다. 역방향 접힘부는 라이터 걸림턱(60)을 형성하기 위한 슬릿(slit)에 의해서 라이터 수납홀더(15)의 잔여부와 분리된다. 본 라이터 수납홀더는 담배갑에 장착될 수 있으며, 어떤 다른 것에도 접착가능한 별도 아이템이 될 수도 있다.

대표도

도 1

색인어

담배, 라이터, 홀더, 담배갑, 라이터홀더

명세서

기술분야

본 발명은 소매용 담배를 수납하는 갑에 관한 것으로, 특히 담배라이터를 수납하기 위한 포켓이 형성된 담배갑에 관한 것이다. 이 포켓은 담배갑과 일체로 형성되어 처음에 담배갑에 납작하게 접혀진 상태로 되어 있거나, 혹은 사용자에 의해 장착되어질 수도 있다. 이 포켓은 사용자에 의해서 담배라이터를 수납하기 위한 홀더를 제공하기 위해 펴질 수 있다.

배경기술

담배는 20개비 들이 셔츠 포켓 사이즈의 직선형 용기 또는 "갑(packs)"으로 판매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알려진 담배갑은 담배를 둘러싸는 내측 포일시트(foil sheet), 용기를 형성하는 접착된 종이구조층(paper structural layer), 및 꽉끼게 둘러싼 외부 셀로판층으로 구성되어 있다. 소위 연질 갑에 있어서 종이구조층은 유연성이 있는 종이이고, 셀로판은 담배갑의 상부 에지(edge)를 둘러싸는 제거가능한 것이고, 포일은 밀봉 스트립(seal strip)에 인접한 상부의 한정된 부분에서 잡아찢기 위한 것이다. 소위 경질 갑에 있어서 종이구조층은 판지이며, 셀로판은 측벽 아래까지 연해있는 폴드백 리드(fold-back lid) 아래로 제거가능하고, 삽입된 포일 부분은 담배의 상단부를 노출시키기 위해 잡아당겨질 수 있다. 경질 갑이든지 연질 갑이든지 구조층은 갑을 형성하기 위해 절단되고, 접하고, 접착된 시트재로 되어있다.

흡연자는 담배에 불을 붙이기 위해 라이터 또는 성냥갑을 소지해야한다. 일반적으로는 일회용 부탄 라이터를 사용하는데, 이것은 일반적으로 담배갑의 길이와 두께에 일치되는 길이와 두께로 만들어진다. 흡연자가 경험하는 일반적인 번거로움은 담배라이터를 둔 곳을 잊어버리는 것이다. 라이터를 둔 곳을 잊어버릴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서 라이터는 담배와 같이 소지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담배갑속의 담배를 다수 소비한 다음 그 여백공간에 라이터를 소지할 수도 있다. 유사하게 알려져 있는 기술로는 담배갑에 접착되거나, 담배갑 및 담배라이터를 수납하는 홀더를 가진 담배갑 캐리어(carrier) 혹은 담배갑 캐디(caddie)를 제공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서, 미국특허 제1,256,549호(굿나우), 미국특허 제2,349,488호(디먼트), 미국특허 제2,958,416호(클라크), 미국특허 제4,000,812호(파사르스키 등), 미국특허 제4,190,148호(샤드 II 등), 미국특허 제4,588,076호(카푸토 등), 미국특허 제4,750,613호(코프), 및 미국특허 제5,630,503호(로데서 등)는 담배 접화구와 담배갑을 동시에 소지하는 다양한 기구를 보여주고 있다. 프랑스특허 제1,229,398호(웨이스), 및 프랑스 특허출원 제2,693,878호(티비), 및 독일 특허출원 DE 3137318 A1은 담배갑과 함께 접화구를 소지하는 기구를 포함하는 흡연용구를 제시하고 있다.

담배갑 및 라이터 캐디는 담배갑과 라이터를 소지함에 있어 편리하지만 흡연자로 하여금 추가적인 담배용구를 소지케하는 번거로움이 따른다. 그리하여 라이터를 잘못두는 것과 마찬가지로 캐디를 잘못두기가 쉽게 된다. 또한 많은 담배갑/라이터 캐디는 부피가 커서 흡연자의 주머니나 지갑속에 넣고 다니기가 어렵게 된다. 만일 별도의 소지용구를 구입, 보유함이 없이 흡연자가 담배갑과 라이터를 동시에 간편하고 저렴한 비용으로 소지할 수 있다면 좋을 것이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

본 발명은 담배갑의 종이구조층(structural layer)에 전개가능한 라이터홀더가 장착된 개량된 소매용 담배갑을 제공한다. 라이터홀더는 처음에는 셀로판 층 아래에 접혀진 납작한 형태, 예를 들어 담배갑의 내측 벽에 눌려진 형태로 있다. 따라서 흡연자가 라이터홀더를 사용하기로 결정하지 않는다면 부착된 라이터홀더로 인하여 담배갑에 어떠한 부피증가도 가져오지 않게 된다. 담배갑은 개별 담배들을 수납하기에 적당한 크기의 복수개의 벽을 갖고 있다. 담배갑은 일측벽에, 바람직하게는 좀더 얇은 수직 측벽에 라이터홀더를 형성하는 패널들을 포함하고 있다. 라이터홀더는 담배갑의 전방 및 후방 측벽에 인접한 담배갑에 간격을 두고 연결된 측벽에 의해 담배갑에 연결된 적어도 하나의 외측벽(outer wall)을 갖고 있다. 라이터홀더의 측벽은 홀더가 사용되지 않을 때, 담배를 수납하는 안쪽 담배갑 벽과 같은 높이에 홀더 벽이 위치되도록 안쪽방향으로 접어넣을 수 있다. 라이터홀더의 측벽은 라이터홀더를 사용상태로 펴서 라이터를 수납할 수 있도록 바깥쪽으로 펼쳐질 수 있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본 발명의 이상과 같은 특징 및 유용성은, 동일한 도면부호가 사용된 첨부 도면과 함께 고려되어 질 추후 기술될 본 발명의 몇몇 바람직한 실시형태의 구체적 기술에 의해서 더욱 자세히 설명될 것입니다.

도 1은 본 발명의 제1 실시형태에 따른 담배라이터홀더가 부착된 박스형 소매용 담배갑 혹은 경질 담배갑의 사시도이다.

도 2는 도 1에 나타난 담배라이터홀더의 부분사시도이다.

도 3은 1에 나타낸 소매용 담배갑의 일부를 나타낸 부분평면도로서, 라이터홀더가 셀로판 포장지 아래에 압착된 접혀진 제1 위치에 담배라이터홀더가 부착되어 있다.

도 4는 도 3과 유사한 부분평면도로서, 개봉의 초기단계에 라이터홀더를 펼치도록 셀로판 포장지가 제거된 상태이다.

도 5는 도 3 및 도 4와 유사한 부분평면도로서, 반대방향으로 접을 수 있는 한쌍의 라이터 결림턱을 나타낸다.

도 6은 도 3 내지 도 5와 유사한 부분평면도로서, 라이터가 라이터홀더속에 내장된 상태를 나타낸다.

도 7은 도 1의 7-7선을 따라 절단된 단면도이다.

도 8은 본 발명에 따라 형성된 담배라이터홀더가 부착된 연질의 담배갑에 적용된 본 발명의 다른 실시형태의 사시도이다.

도 9는 본 발명의 제1 실시형태에 따른 라이터홀더를 가진 박스형 경질 담배갑의 사시도이다.

도 10은 도 9에 나타난 라이터홀더에 대한 부분사시도이다.

도 11은 도 9의 11-11선을 따라 절단된 단면도이다.

도 12는 차량 선바이저(sun visor)의 측면에 장착된 본 발명의 제2 실시형태에 대한 사시도이다.

도 13은 도 9에 나타난 라이터홀더와 유사한 부분사시도로서, 다른 결림턱을 포함하고 있다.

실시예

도 1은 담배갑의 한 부분으로 형성되고 절곡가능하게 접혀져서 공급되도록 배열되고 또한 라이터(17)를 수납하기 위해 별려질 수 있는 라이터홀더(15)를 가진 개량된 소매용 담배갑(5)을 나타내고 있다. 담배갑(5)은 담배수납용기(10) 및 그와 일체로 된 라이터홀더(15)로 구성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일회용(예, 부탄) 라이터(17) 역시 도 1에 나타나 있다. 타원 형상의 라이터가 도시되어 있지만, 다른 형상의 라이터도 본 발명과 함께 사용되어질 수 있음은 용이하게 감지될 수 있다. 담배수납용기(10)는 전형적으로 이십개의 담배를 수납하는 직선형 박스 형상의 종이 또는 종이판지로 구성되어 있다. 패키지 재료는 통상적으로 연질 갑용으로 종이가 사용되거나, 도 1에서 나타낸 바와 같은 경질 갑용으로는 유연성이 떨어지는 페이퍼보드 또는 카드보드가 사용된다. 연질 갑이든 경질 갑이든간에 도 1 내지 도 8에 나타난 바와 같이 담배갑(5)은 상부면(20), 정면벽(25), 배면벽(30), 측면벽(35) 그리고 바닥면(40)을 갖는다(도 4-6 참조).

도 2를 참조하면, 라이터홀더(15)는 하나의 외측벽(45)과 한쌍의 측벽(50)을 포함한다. 라이터홀더(15)는 담배수납용기(10)과 동일한 패캐지 재료로 완전히 일체형으로 형성될 수 있거나, 혹은 접착제에 의해서 수납용기(10)의 표면에 전체 또는 부분적으로 부착되어질 수 있다. 라이터홀더(15)의 외측벽(45)과 측면벽(50)은 사실상 동일한 길이(상부에서 바닥까지)를 갖지만, 외측벽(45)이 측면벽(50)보다 다소 길어서 일반적 형태의 일회용 가스라이터 길이를 보완할 수도 있다. 이 외는 달리, 이들 길이의 비율은 예를 들어 도 7에 나타난 것과 같이 더욱 등근 단면을 갖는 라이터를 보완하도록 다양하게 될 수 있다. 외측벽(45)은 담배수납용기(10)의 측면벽(35)의 폭과 일치되는 폭을 갖는다. 풀 탭(pull tab)(55)이 외측벽(45)의 상부 에지(edge)에 배치될 수가 있다. 측면벽(50)은 외측벽(45)의 측면 가장자리로부터 돌출되어 윗면에서 바닥까지 외측벽(45)과 동일공간에 걸쳐 형성된다.

도 4에 나타난 실시형태에 있어서, 꽂의 형태를 이루는 시트재는 라이터홀더가 전면벽(25) 혹은 후면벽(30)의 연장된 부분으로 형성되도록 연속된 길이를 포함한다. 그러한 경우에 적어도 하나의 측면벽(50)은 담배수납용기(10)에 접착시키기 위한 자유에지(free edge) 부분에 형성된 플랜지(62)를 포함한다. 이렇게 하여 담배수납용기의 측면벽(35), 외측벽(45) 및 측면벽(50)은 수납용기(10)의 측면에 연결된 개방형의 접을 수 있는 튜브를 형성하게 된다.

횡으로 한정된 슬릿(slit)은 도 1, 2, 5 및 8에 잘 나타낸 걸림턱(stop)(60)을 형성하도록 각 측면벽(50) 바닥에 인접하여 형성되어 있다. 상기 슬릿(slit)은 슬릿 양측의 서로 인접한 포장재 사이의 마찰접촉을 회피할 수 있도록 충분히 넓게 해주고 그리하여 측면벽이 열려질 때 걸림턱(60)이 적어도 부분적으로 안쪽으로 당겨지도록 한다. 각 걸림턱(60)은 슬릿에서 각 측면벽(50)의 잔여부로부터 분리되어지고 그 일단이 외측벽(45)에 타단이 담배수납용기(10)의 측면벽(35)에 접착된 포장재 스트립을 포함한다. 이러한 구조로 인해서, 걸림턱(60)은 서로를 향해 안쪽으로 그리고 각 측벽(50)의 위치에서 안쪽으로 자유롭게 접혀지고, 반면에 측벽(50)은 서로 바깥쪽으로 벌려짐으로써 라이터홀더가 펴질 수 있도록 한다. 걸림턱(60)은 이하 더욱 구체적으로 설명되는 바와 같이 라이터가 라이터홀더(15)를 완전히 빠져나감을 방지하도록 각 측벽(50)의 바닥 가까이에 형성된다.

라이터홀더(15)를 포함하는 담배갑(5)의 일부가 도 9-12에 나타난 바와 같이 종이 또는 카드보드의 분리된 스트립으로 절단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더 구체적으로는, 별도의 분리된 종이 또는 카드보드 스트립으로 형성되고 담배갑의 측벽과 같은 어떤 적당한 평평한 표면에 부착할 수도 있는 라이터 수납홀더(18)는 또한 외측벽(45)과 한쌍의 측벽(50)을 포함한다. 라이터수납홀더(18)의 외측벽(45)과 그 측벽(50)은 실질적으로 같은 길이(상부에서 바닥까지)를 갖지만, 외측벽(45)은 각 측벽(50) 보다 더 넓게 될 수 있어서 라이터수납홀더(18)가 일반적인 부탄가스라이터를 보완할 수가 있다. 이들 길이의 비율은 예를 들어 더욱 원형 단면을 갖는 라이터에 맞출수 있도록 필요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외측벽(45)의 폭은 일반적인 부탄 가스라이터의 폭과 비슷하다. 종종 외측벽(45)은 담배수납용기(10)의 벽(35)과 실질적으로 같은 길이를 갖는다. 풀탭(55)은 라이터수납홀더(18)를 손으로 잡아당겨 펴기 위해 외측벽(45)의 상부 에지에 형성될 수 있다. 측벽(50)은 외측벽(45)의 측면 가장자리에서 돌출되어 상부에서 바닥까지 외측벽(45)과 같은 공간에 걸쳐 형성된다.

각각의 측벽(50)은 플랜지(62)를 포함한다. 플랜지(62)는 각 측벽(50)의 자유 에지에서 연장된다. 접착제 코팅은 각 플랜지(62)의 외부 면에 처리되며, 수납홀더(18)를 적당한 표면(64)에 위치시키기 전에, 비접착성종이재(63) 등의 제거가능한 스트립에 의해 커버될 수 있다. 비록 도시된 수납홀더가 담배갑과 가스라이터의 크기에 맞도록 규격되어 있지만, 도시된 수납홀더는 테이블, 노트북 카버, 책상서랍, 록커도어, 선 바이저(100)(도 12) 등과 같은 표면에 접착되어질 수 있다. 이렇게 하여, 외측벽(45), 측벽(50), 및 플랜지(62)는 개방형의 접을 수 있는 채널(channel)을 형성한다.

횡으로 한정된 슬릿(slit)은 도 9-12에 나타난 바와 같이 걸림턱(60)을 형성하도록 각 측면벽(50)의 하부에 인접하여 형성되어 있다. 각 걸림턱(60)은 슬릿에서 각 측면벽(50)의 잔여부로부터 분리되어지고 그 일단부가 외측벽(45)에 타단부가 각 플랜지(62)의 하부에 접착되어진 포장재 스트립을 포함한다. 이러한 구조로 인해서, 수납홀더(18)를 장착할 때 걸림턱

(60)은 서로를 향해 안쪽으로 그리고 각 측벽(50)의 위치에서 안쪽으로 자유롭게 접혀지고, 반면에 측벽(50)은 서로 바깥쪽으로 벌려짐으로써 라이터홀더가 펴질 수 있도록 한다. 걸림턱(60)은 각 측벽(50)의 하부 가까이에 형성되고 라이터가 라이터 수납홀더를 완전히 빠져나감을 방지하도록 라이터수납홀더(18) 안으로 연장된다.

걸림턱(70)은 도 13에 나타난 바와 같이 외측벽(45)의 하부를 연장함으로써 형성할 수도 있다. 걸림턱(70)은 외측벽(45), 측벽(50) 그리고 플랜지(62)로부터 형성된 개방형의 접을 수 있는 채널에 의해 한정된 개구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외주형상을 포함한다. 이 실시형태에서, 걸림턱(70)은 외측벽(45)의 바닥에(71)에 접을 수 있게 부착되고, 외부 자유 에지(72)를 포함한다. 걸림턱(70)을 전개하기 위해서는 외부 자유 에지(72)가 측벽(35)과 맞물리게 될 때까지 측벽(35)을 향하여 에지(71)를 따라 걸림턱을 굽혀주기만 하면된다. 비록 걸림턱(70)과 측벽(35)의 맞물림이 통상 대부분의 라이터를 지지하기에 충분하지만, 외부 자유 에지(72)의 일부는 걸림턱(70)을 측벽면(35)에 체결하도록 접착제로 코팅될 수도 있다.

이러한 본 발명의 실시형태에 따른 수납홀더(18)를 형성하기 위하여 종이 혹은 카드보드재로 된 단일의 시트의 일부가 두개의 측벽(50)사이에 외측벽(45)을 형성하도록 접혀진다. 각 측벽(50)의 각각의 외부 에지부는 체결 플랜지(62)를 형성하기 위해 세로로 접혀진다. 라이터홀더(18)의 측벽(50)은 접힘주름선(pleat)(65)이 외측벽(45)과 각 플랜지(62) 사이의 중앙에 위치되어 형성되도록 상부에서 바닥까지 직선을 따라서 세로방향으로 접혀진다. 도 9 및 도 10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각 접힘주름선(65)은 각 측벽(50)이 플랜지(62)의 내측 표면을 향하여 안쪽으로 접힐 수 있도록 측벽(50)의 일부가 주름선에서 접히게 해준다. 횡으로 배향된 슬릿은 걸림턱(60)을 형성할 수 있도록 각 측벽(50)의 일단(하부쪽)에 인접하여 형성된다. 각 걸림턱(60)은 연장된 각각의 접힘주름선(65)을 갖지만, 슬릿에 의해 분리되어 있고 따라서 결합된 벽이 라이터를 삽입함에 따라 넓어질 때 약간 안쪽으로 접혀진 형태로 남게 된다.

도 1-7에서 나타난 실시형태에서, 라이터홀더(15)와 담배수납용기(10)는 종이나 카드보드로 된 단일 시트나 스트립으로 하나로 된 일체형 유니트로 형성된다. 종종 라이터홀더(15)를 형성한 포장재의 일부는 펴졌을 때 실질적으로 직사각형 형상을 갖는다.

도 1-7에 나타난 바와 같이 담배갑(5)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단일시트로 된 포장재의 일부는 두개의 측벽(50)사이에 외측벽(45)을 형성할 수 있도록 접혀진다. 한 측벽(50)의 외부에지부분은 체결 플랜지(62)를 형성할 수 있도록 세로방향으로 더욱 접혀진다. 라이터홀더(15)의 측벽(50)은 상부에서 바닥까지 직선을 따라 세로로 접혀지고, 따라서 접힘주름선(65)이 외측벽(45)과 담배수납용기 측벽(35) 사이의 중앙부에 형성된다. 도 1 및 도 2에 나타낸 바와 같이, 각 접힘주름선(65)은 각 측벽(50)이 담배수납용기(10)의 단부 벽(35)을 향해 안쪽으로 접힐 수 있도록 측벽(50)의 일부를 접힘주름선 근처에서 접히게 해준다. 일단 접힘주름선(65)이 각 측벽(50)에 형성되면 횡으로 배향된 슬릿은 걸림턱(60)을 형성하도록 각 측벽(50)의 일단(바닥쪽)에 근접해서 형성된다. 각 걸림턱(60)은 연장된 각각의 접힘주름선(65)을 갖게 됨을 알 수 있다. 포장재로 된 단일시트의 나머지부분은 종래 알려진 방법에 의거 담배수납용기(10)을 형성하도록 역시 접혀진다(도 7). 자유 단부는 담배갑(5)을 완성하기 위해 담배갑의 측면부에 접착된다.

소매용 담배갑(5)은 담배수납용기(10)에 의해 특정되는 내부 스페이스를 형성하고, 그속에 포일지로 안을 대고 포일속에 20여개피의 담배를 넣음으로써 만들어지게 된다. 상부(20)는 낱개의 담배들이 담배수납용기(10) 내에서 자리잡도록 닫혀진다. 담배가 채워지고 닫혀진 담배갑(5)은 도 3의 도면부호 75로 표시된 투명 랩으로 포장된다. 예로서, 셀로판은 내용물의 신선도를 보장하도록 소매담배갑 봉인 유지하는 데 잘 알려져 있다.

셀로판 포장이 담배갑(5)에 적용됨에 따라 셀로판의 일부분이 라이터홀더(15)의 외측벽(45)을 압박하고 외측벽(45) 및 측벽(50)을 담배수납용기(10)의 측벽(35)에 대해 접어지게 해준다. 즉 셀로판이 라이터홀더(15)를 담배수납용기에 대해 접어주고 있는 것이다. 측벽(50)과 걸림턱(60)은 접힘주름선(65)과 라이터홀더의 코너부분에서 안쪽으로 접혀서 라이터홀더(15)의 가운데 통로길 쪽으로 접혀들어간다. 외측벽(45), 측벽(50), 및 걸림턱(60)의 동작은 라이터홀더(15)를 담배수납용기(10)의 측벽(35)과 같은 높이로 접히게 한다. 이렇게 하여, 라이터홀더(15)를 형성하는 구조적 요소들이 담배갑의 하역 및 소매판매 중 셀로판포장에 의해서 담배수납용기(10)의 측벽(35)에 대해 접혀지고 굳건히 유지된다. 라이터홀더(15)가 이렇게 접혀진 상태로 유지될 때 라이터홀더는 후차적인 각 담배갑의 판지포장 작업이나, 담배자동판매기로부터의 담배갑 인출작업에 지장을 주는 작업방해를 초래하지 않는다. 라이터홀더(18)의 경우에 있어서는 담배수납용기(10)의 측면 대용으로 적당한 지지부재를 사용한 유사한 공정이 사용될 수 있다. 예를 들면, 라이터홀더(18)는 평평한 카드보드 조각에 의해 지지되고, 상기 언급된 방법에 따른 셀로판 포장이 되어서, 별개의 포장된 흡연용구로 판매되거나 라이터의 소매 패키지에 포함될 수도 있다.

흡연자가 본 발명에 의해 만들어진 소매 담배갑(5)을 구입했을 때 흡연자는 셀로판포장을 담배갑으로부터 단순히 제거함으로써 라이터홀더(15)를 펼쳐낼 수 있게 된다. 일단 셀로판 포장이 벗겨지게 되면, 흡연자는 도 2, 4, 및 5에 나타낸 것처럼 라이터홀더(15)를 펴기 위해서 풀 텁(55)을 바깥쪽으로 당겨내기만 하면 된다. 본 발명은 (i) 측벽(50)이 외측벽(45)의

안쪽으로 접혀져서 담배수납용기(10)의 측벽(35)과 실질적으로 같은 높이로 되는 최초위치 사이를 이동할 수 있고, (ii) 외측벽(45)이 담배수납용기 측벽(35)으로부터 연장된 고정 위치가 되는 외측벽(45)이 제공된다. 더 구체적으로, 외측벽(45)이 담배수납용기(10)의 측벽(35)으로부터 당김연장됨에 따라 라이터홀더(15)의 측벽(50)은 접힘주름선(65)을 따라 열리기 시작하고 그리하여 중앙부 통로(passaway)를 갖는 튜브구조를 담배갑(5)의 측면에 형성하기 시작한다(도 1 및 도 8).

통상의 라이터(17)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라이터홀더(15)에 위치시킬 수 있다. 라이터(17)가 먼저 라이터홀더(15)의 안쪽에 바닥면을 정렬하도록 배향된다. 다음에 라이터(17)는 그 바닥이 담배수납용기(10)의 측벽(35), 홀더의 외측벽(45) 및 측벽(50) 사이의 라이터홀더(15)에 삽입되어도록 밀어 넣는다. 라이터(17)가 라이터홀더(15) 속에 삽입됨에 따라 라이터홀더(15)는 라이터를 수납하기에 적당할 정도로 벌려지게 된다(도 6, 8). 걸림턱(60)은 슬릿에 의해 그 상부 측벽의 팽창열림으로 분리되지만, 걸림턱부(60)는 라이터(17)가 라이터홀더(15)에 삽입됨으로써 홀더의 측벽(50)이 불룩해짐에 따라 접힘주름선(65)이 바닥에서 좀더 깊게 주름잡히기 때문에, 그 상부 측벽에 대해 안쪽으로 돌출되게 된다(도 6). 라이터(17)는 그 바닥이 안쪽으로 돌출되는 걸림턱(60)에 닿을 때까지 라이터홀더(15) 속으로 밀어 넣어진다. 라이터(17)는 라이터홀더(15)의 바닥면 아래로 빠져나감이 없어 사용자가 원하는대로 회수의 제한없이 삽입과 이탈이 가능하게 된다.

도 9, 10, 및 12에를 참조하면, 별도의 분리된 포장재로부터 만들어지는 라이터홀더(18)는 임의의 평면, 예를 들면 일반적 담배갑의 측면, 책상서랍의 안쪽면, 자동차 선바이저(100)의 표면, 혹은 어떤 다른 평면에서도 라이터홀더로 장착되어 사용가능하다.

본 발명의 라이터홀더는 담배갑의 좌측면에 부착되어 있지만, 사용시 우측면에도 장착가능하다. 마찬가지로, 실용성은 적지만, 라이터홀더는 담배갑의 앞쪽, 뒤쪽, 위쪽, 또는 바닥에 위치될 수도 있다.

본 발명은 또한 "경질 갑"(도 1-7) 또는 "연질 갑"(도 8)의 어디에서나 본 발명의 기술사상에서 이탈됨이 없이 사용되어질 수 있다.

담배갑과 라이터를 소지하는 종래의 장비와 관련된 전술한 문제점을 해결한 본 발명은 여러가지 사용상 이점이 있다. 개량된 담배갑은 라이터 소지 형태를 사용하지 않을 때 일반적인 담배갑의 표준 크기와 형상과 부합되지만, 흡연자로 하여금 담배갑과 라이터의 동시소지가 가능케 해주고 있다.

또한 담배라이터 소지의 특징은 라이터홀더를 형성함에 있어 통상의 담배갑 사이즈를 변화시키지 않고 제공된다. 라이터홀더는 담배수납용기의 측면에 접침식 밀착이 가능하며, 셀로판 외포장에 의해 밀착유지되며, 그것으로 인해 담배갑으로부터 담배를 꺼내는데 아무런 방해작용도 없다.

사용하지 않을 때 셀로판 포장지의 잠재된 이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라이터홀더의 용도를 사용을 원하는 흡연자만이 이점을 누릴 수 있다. 또한 본 개량된 담배갑은 라이터동시소지의 특성이 담배팩 생산에 있어서의 비용절감이 가능하도록 기존 담배 포장재를 그대로 사용한다는 점이다. 본 발명은 "연질 갑"과 "경질 갑", 통상의 담배갑 그리고 차량선바이저에 모두 사용될 수 있다.

또한 본 발명품을 사용함으로써 사용자는 일단 한번 사용한 담배팩에서 라이터만을 추후사용을 위해 별도 보관할 수고가 필요없이 새 담배팩을 구입하는 즉시 그에 부착된 새 가스라이터를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편리성도 제공한다.

또한 분리장착가능 라이터홀더는 사용자로 하여금 어떠한 사용처 표면에 부착사용가능하도록 해주며, 원하면 라이터홀더가 장착되지 아니한 기존의 일반담배갑에 부착사용할 수 있는 이점도 제공한다.

본 발명은 본 명세서 및 도면에 개시된 구체적 구조에만 한정되지는 것은 아니고, 첨부된 청구범위의 범위내에서의 변형이나 등가물을 포함한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흡연자가 원하는 위치에 담배라이터를 보유하기 위한 라이터 수납 홀더에 있어서,

개방형 채널형상의 구조를 형성하도록 두 측벽에 연결된 적어도 하나이상의 외측벽을 포함하고, 여기서 상기 측벽은 자유에지에서 연장된 플랜지를 포함하고, 상기 측벽은 (i) 상기 외측벽이 상기 각 측벽의 접힌 부분과 같은 높이에 위치되도록 안쪽으로 접힐 수 있고, (ii) 상기 라이터 수납 홀더를 전개할 수 있도록 바깥쪽으로 이동할 수 있고, 또한 (iii) 상기 라이터 수납 홀더의 안쪽방향으로 연장되는 횡으로 배향된 걸림턱부를 포함하며, 상기 걸림턱부는 슬릿에 의해 접경된 적어도 하나의 상기 측벽의 바닥부분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라이터 수납 홀더.

청구항 2.

삭제

청구항 3.

삭제

청구항 4.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슬릿은 상기 측벽들 부분간에 마찰접촉을 회피할 수 있을 정도의 충분한 폭을 갖는 것인 라이터 수납 홀더.

청구항 5.

제4항에 있어서, 각 측벽에 배치된 적어도 두개의 걸림턱부를 가지며 상기 두 걸림턱부가 안쪽으로 자유롭게 이동되고, 반면에 두 측벽이 바깥쪽으로 이동되는 것인 라이터 수납 홀더.

청구항 6.

제1항에 있어서, 상기 각각의 측벽은 그 측벽의 길이를 따라서 세로방향으로 연장되고 상기 외측벽과 상기 플랜지 사이의 중간에 위치한 접힘주름선을 포함하고 상기 측벽은 상기 측벽의 바닥부에 인접한 상기 걸림턱부를 형성하기 위해 상기 외측벽과 상기 플랜지 사이에 횡으로 배향된 슬릿을 포함하는 것인 라이터 수납 홀더.

청구항 7.

삭제

청구항 8.

삭제

청구항 9.

제1항에 있어서, 상기 플랜지는 내측 및 외측벽을 포함하고, 상기 외측벽은 접착제가 코팅되어 있으며, 상기 접착제는 제거 가능한 방호커버재로 덮여 있는 것인 라이터 수납 홀더.

청구항 10.

흡연자가 원하는 위치에 담배라이터를 보유하기 위한 라이터 수납 홀더에 있어서,

개방형(open ended) 채널을 형성하도록 이격분리된 한 쌍의 측벽에 연결되어 있고 상기 각 측벽이 자유단부(free end)에서 연장된 플랜지를 갖는 적어도 하나이상의 외측벽을 포함하고,

상기 측벽은 (i) 외측벽이 상기 각 측벽의 접혀진 부분에 대해 같은 높이로 위치되도록 안쪽으로 접힐 수 있고, (ii) 상기 라이터홀더를 형성하도록 바깥쪽 방향으로 연장될 수 있으며, 여기서 상기 각 측벽은 상기 측벽의 길이를 따라서 세로 방향으로 연장되고 상기 외측벽과 상기 측벽의 자유단부 사이의 중앙에 위치하는 접힘주름선을 갖고, 상기 측벽은 측벽의 바닥부분에 인접한 적어도 하나이상의 걸림턱을 형성하기 위해 상기 외측벽과 상기 자유단부 사이에 횡으로 배향된 슬릿(slit)을 한정하고 그리하여 상기 라이터홀더가 하적수송 이전에 평편부재 위에 위치하여 셀로판으로 포장될 때 상기 셀로판 포장재가 상기 라이터홀더의 외측벽을 압착함으로써 상기 외측벽을 상기 각 측벽의 접힌 부분과 같은 높이에 위치시키도록 하는 것인 라이터 수납 홀더.

청구항 11.

삭제

청구항 12.

소매용 담배갑에 있어서,

여러 개피의 담배를 수납할 수 있도록 치수화된 다수의 측벽을 갖는 담배수납용기; 및

상기 담배수납용기의 어느 한 벽면 위에 위치한 라이터 홀더를 포함하고,

상기 라이터 홀더는 라이터를 수납하기 위해 치수화된 중앙 통로부를 갖는 접힘 가능한 튜브를 형성하도록 한 쌍의 이격분리된 측벽에 의해 상기 담배수납용기에 연결되어 있는 적어도 하나 이상의 외측벽을 갖고, 여기서 상기 한 쌍의 측벽은 (i) 상기 외측벽이 상기 담배수납용기 벽과 같은 높이로 위치되도록 상기 중앙 통로부에 대해 안쪽으로 접힐 수 있고, (ii) 상기 라이터홀더를 전개하기 위해 바깥쪽으로 이동될 수 있으며, 라이터 홀더의 안쪽 방향으로 연장된 횡으로 배향된 걸림턱부를 포함하고, 상기 걸림턱부는 횡방향 슬릿에 의해 서로 접경된 적어도 하나의 상기 측벽의 바닥 부분을 포함하는 것인 소매용 담배갑.

청구항 13.

소매용 담배갑에 있어서,

여러 개피의 담배를 수납할 수 있도록 치수화된 다수의 측벽을 갖는 담배수납용기; 및

상기 담배수납용기의 다수의 측벽의 어느 하나에 위치한 라이터 홀더를 포함하고,

상기 라이터 홀더는 개방형 튜브를 형성하기 위해 한 쌍의 이격분리된 측벽에 의해 상기 담배수납용기에 연결되어 있는 적어도 하나 이상의 외측벽을 갖고, 여기서 상기 한 쌍의 측벽은 (i) 상기 외측벽이 상기 담배수납용기 벽과 같은 높이로 위치되도록 안쪽으로 접힐 수 있고, (ii) 상기 라이터홀더를 형성하기 위해 바깥쪽으로 연장될 수 있으며, 상기 각 측벽은 상기 측벽의 길이를 따라서 세로 방향으로 연장되고 상기 외측벽과 상기 담배수납용기의 한 벽면 사이의 중앙에 위치하는 접힘주름선을 갖고, 상기 측벽은 측벽의 바닥부분에 인접한 적어도 하나이상의 걸림턱을 형성하기 위해 상기 외측벽과 상기 담배수납용기의 한 벽 사이에 횡으로 배향된 슬릿을 한정하고 그리하여

상기 담배갑이 하적수송 이전에 셀로판으로 포장될 때 상기 셀로판 포장재가 상기 라이터홀더의 외측벽을 압착하여 상기 외측벽을 상기 담배수납용기 벽과 같은 높이에 위치시키도록 되어 있는 것인 소매용 담배갑.

청구항 14.

흡연용구 운반 시스템에 있어서,

여러 개피의 담배를 수납할 수 있도록 치수화된 복수개의 벽면을 갖는 담배수납용기;

개방형 튜브를 형성하도록 분리이격된 한 쌍의 측벽에 의해 상기 담배수납용기의 벽에 연결되어 있는 외측벽을 포함하고 있으며, 상기 각 측벽이 중앙에 위치한 접힘선과 상기 라이터 홀더의 안쪽방향으로 연장되는 횡으로 배향된 걸림턱부를 갖고, 상기 외측벽은 외측벽이 담배수납용기의 벽면과 같은 높이가 되게 측벽이 안쪽으로 접혀져 있는 제1 위치와 외측벽이 담배수납용기 벽면으로부터 연장되어 있는 제2 위치 사이에서 이동가능하게 되어 있는 상기 담배수납용기의 한 벽면 위에 위치한 라이터 홀더; 및

상기 라이터 홀더에 위치된 담배 라이터로 구성된 담배갑을 포함하는 것인 흡연용구 운반 시스템.

청구항 15.

소매용 담배갑에 있어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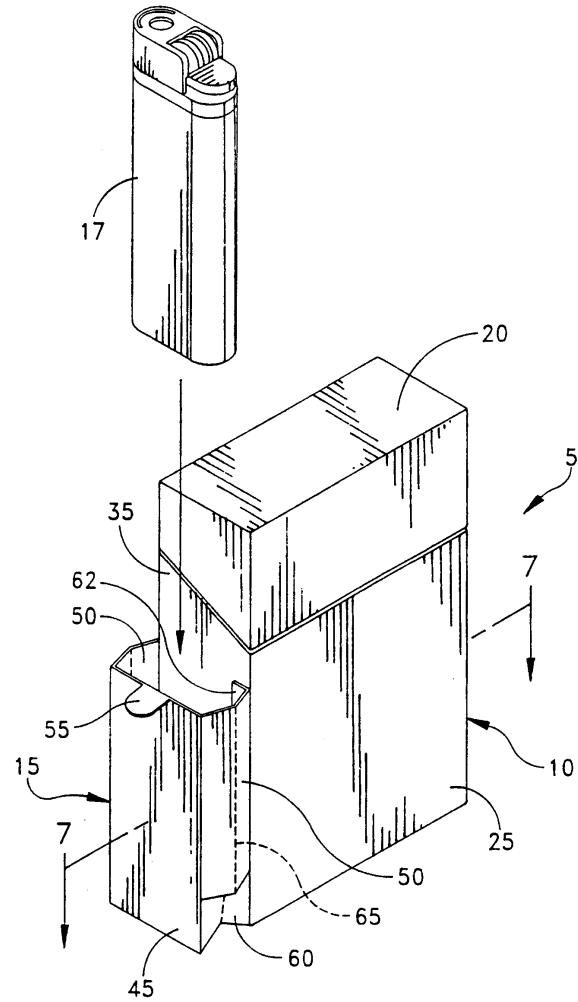
여러 개피의 담배를 수납할 수 있도록 사이즈화된 복수개의 벽면을 갖는 담배수납용기; 및

상기 담배수납용기의 복수개의 벽면중 어느 하나에 위치한 라이터 홀더를 포함하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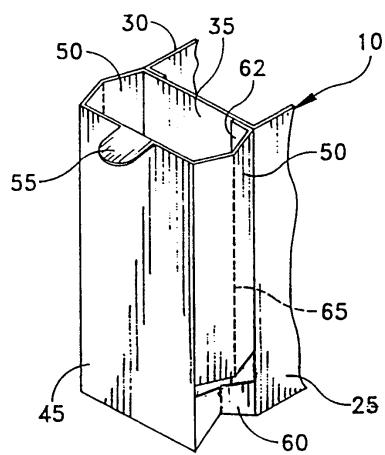
상기 라이터 홀더는 개방형 튜브를 형성하도록 적어도 하나의 측벽에 의하여 상기 담배수납용기에 연결되어 있는 적어도 하나 이상의 외측벽을 포함하고 있으며, 여기서 상기 측벽은 (i) 상기 외측벽을 상기 담배수납용기의 한 벽면과 같은 높이에 위치시키도록 안쪽방향으로 접힘가능하고, (ii) 상기 라이터 홀더를 전개시킬 수 있도록 바깥쪽 방향으로 이동가능하며, (iii) 상기 라이터 홀더의 안쪽 방향으로 연장되는 횡으로 배향된 걸림턱부를 포함하며, 상기 걸림턱부는 슬릿에 의해 접경된 적어도 하나의 상기 측벽의 바닥부분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소매용 담배갑.

도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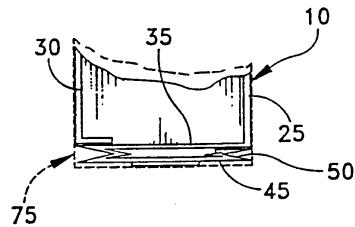
도면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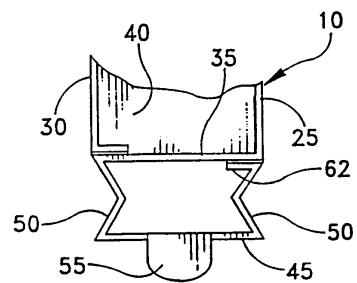
도면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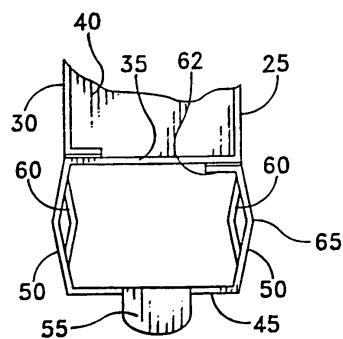
도면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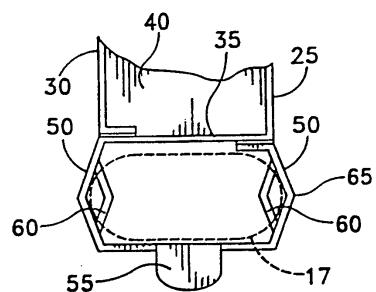
도면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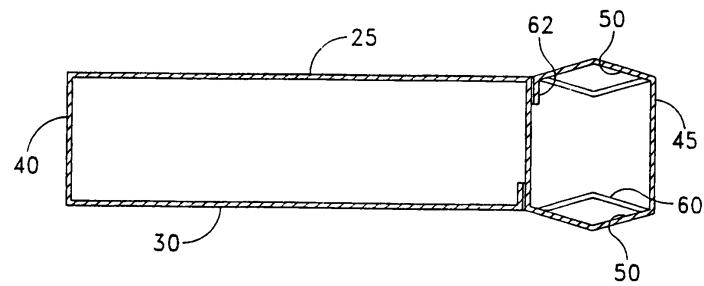
도면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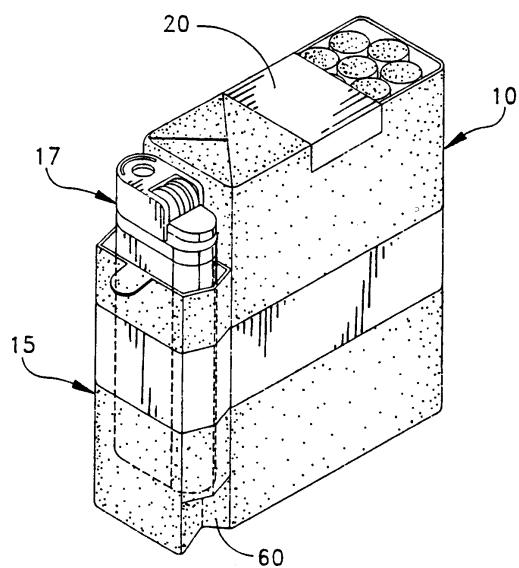
도면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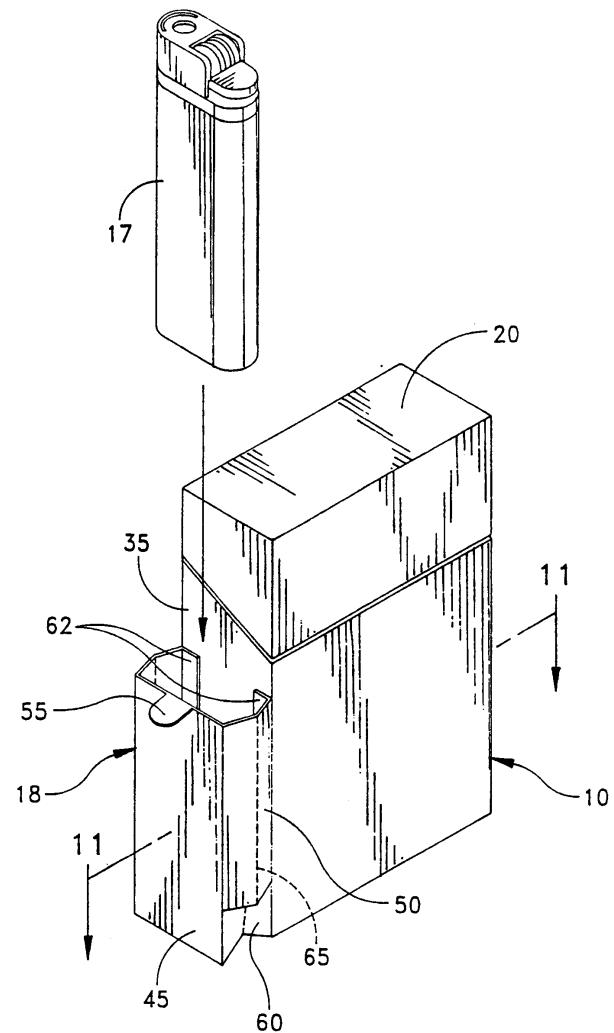
도면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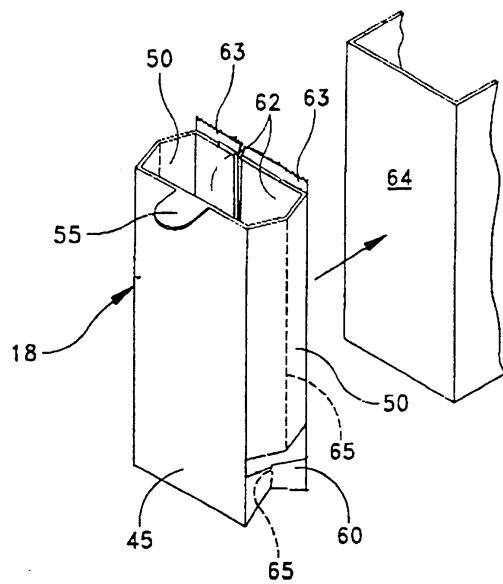
도면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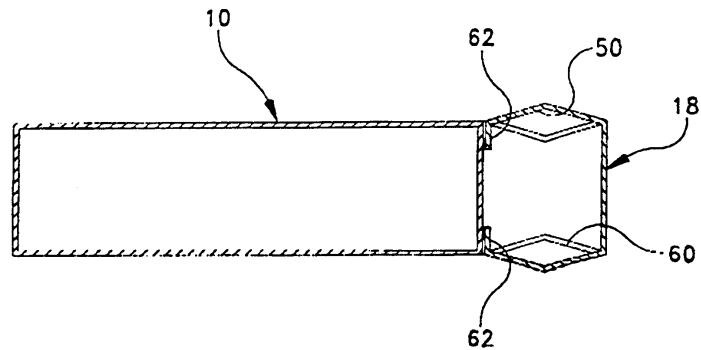
도면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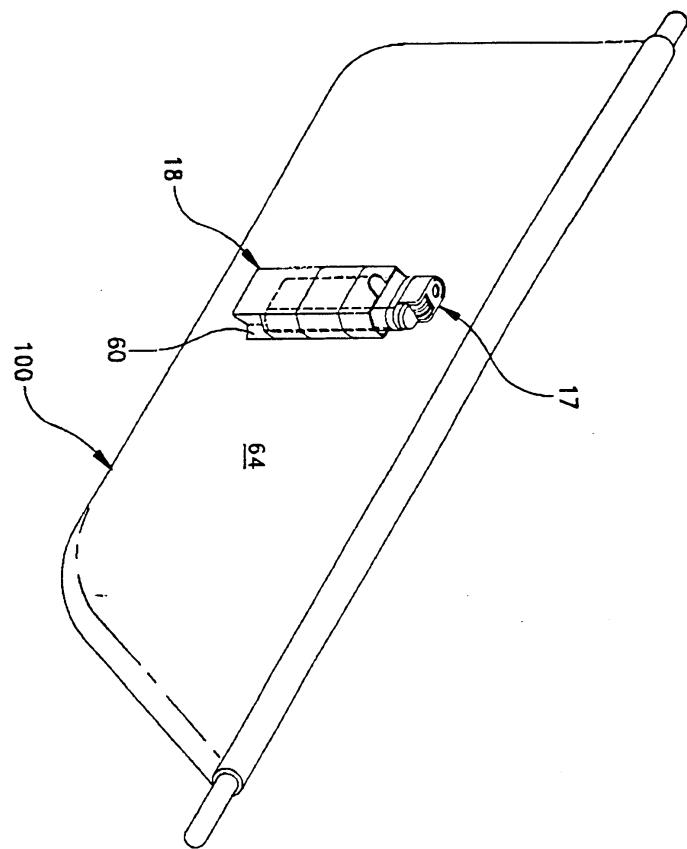
도면10



도면11



도면12



도면13

